

성적평가규정

제정 2017.07.24.

개정 2018.07.16.

2차 개정 2019.05.2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학칙 제42조 및 학칙시행규칙 제 36조에 따라 성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성적평가) 성적평가는 필기 및 실기시험·퀴즈·과제·실험·개별연구·토론·팀프로젝트·학습참여도 및 출석 중에서 2가지 요소 이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(이하 “점수”라 한다)로 한다. 다만, 현장실습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다르게 할 수 있으나 실습기관 평가점수를 50%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.

제3조(평가방법 및 등급) ①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.

1. 수강인원 20명 이하인 교과목인 경우
2. 실습교과목인 경우
3. 자격증 교과목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인 경우

②상대평가인 경우 성적의 등급별 분포비율은 다음을 따른다.

등급	A ⁺	A	B ⁺	B	C ⁺	C	D ⁺	D	F
비율	30%		40%		30%				

③절대평가인 경우의 점수별 등급은 다음과 같다.

점수	등급	점수	등급
100 ~ 95	A ⁺	74 ~ 70	C
94 ~ 90	A	69 ~ 65	D ⁺
89 ~ 85	B ⁺	64 ~ 60	D
84 ~ 80	B	59 ~ 0	F
79 ~ 75	C ⁺		

④교과목별 수업에 대한 출석일수가 4분의 3 미만인 자의 성적등급은 과락(F)으로 평가한다.

제4조(평가기준의 변경) 성적평가는 매학기 또는 학년도 강의계획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되, 부득이하게 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교수가 강의계획서 변경사유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성적의 산출 및 표기) ①성적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평점은 성적등급을 4.5 만점 기준으로 한다.
 2. “평점평균”은 (교과목별 평점 x 학점수)의 합계를 총 학점수로 나눈 값으로 하며, 그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 3. “백분율”은 (교과목별 점수 x 학점수)의 합계를 총 학점수로 나눈 값으로 하며, 그 값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- ②성적은 성적의 등급과 평점을 표기하고, 필요한 경우 점수도 표기할 수 있다.
 ③상대평가의 경우에는 성적등급에 따른 백분위점수를 다음과 같이 하고, 학생이 취득한 점수는 상대평가를 위한 순위산정에만 활용한다.

성적등급	백분위점수	성적등급	백분위점수
A ⁺	100	C	74
A	94	D ⁺	69
B ⁺	89	D	64
B	84	F	0
C ⁺	79		

④절대평가의 경우에는 학생이 취득한 점수를 표기한다.

제6조(계절학기 성적) ①계절학기에서 이수학점을 인정받은 교과목과 성적은 학적부와 성적증명서에 “계절학기”를 표시하고 기재한다.

- ②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과 총평점평균에 포함한다.
- ③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직전학기의 평점평균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학사경고 또는 장학생 선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성적처리 및 제출) ①매 학기말 성적은 기말고사 종료 후, 7일 이내에 담당교수가 학습관리시스템(LMS)에 입력하여야 한다.

- ②추가시험의 성적은 최대 89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- ③사전에 결시원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대체시험 또는 대체과제의 성적은 최대 89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- ④중간시험 · 기말시험 및 과제 중 2가지 이상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는 취득한 점수와 상관없이 성적은 과락(F)으로 처리한다.
- ⑤부정행위가 적발된 교과목의 성적은 ‘0점’으로 처리한다.
- ⑥ 삭제 <2019.05.28.>

제8조(성적이의신청 및 성적정정) ①학생이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담당교수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.

②성적누락 또는 기재(전산입력)착오인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성적을 정정할

수 있다.

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성적정정 사유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학기 중 휴학자의 성적인정)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·출석·과제 및 학습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.<개정 2018.07.16.>

제10조(성적평가자료 보관기간) 성적평가관련 자료는 해당학생의 졸업 후 4년까지 보관한다.

부 칙(2017. 7. 24)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규정) 종전의 성적평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(2018. 7. 16)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5. 28.)

-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